

의안번호	2201412
의 퇴 인	안규백의원
회 답 일	2024.08.09.
추계번호	24C1896

조력준업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조력준엄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 및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5,460만원, 2029년 1억 46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억 7,300만원(연평균 1억 3,46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 ¹⁾	150	-	-	-	-	150	30
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(안 제7조) ²⁾	5.6	5.6	5.6	5.6	5.6	28	5.6
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(안 제11조) ¹⁾	99	99	99	99	99	495	99
합 계	254.6	104.6	104.6	104.6	104.6	673	134.6

주: 1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추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2)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종합계획의 수립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력준엄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 (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)	○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○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-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통령령으로 정함	
3	안 제8조 (국립조력준엄사관리기관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력준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력준엄사관리기관을 둠(제1항) －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11조 (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)	○ 조력준엄사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를 둠(제1항) ○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(제3항) ○ 심사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, 심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(제6항) －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7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종합계획의 수립)	○	·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7조 (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)	○	·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8조 (국립조력준엄사관리기관)	×	·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, 현재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4	안 제11조 (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)	○	·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- (안 제8조) 제정안에 따라 국립조력준엄사관리기관을 설치할 경우, 기관 설립과 신규 인력 채용,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 신규 기관 설립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명의료결정법”)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‘국가생명윤리정책원’을 설립(2011년)하였으며, 2018년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
 - 제정안에 따른 국립조력준엄사관리기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되거나 기존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사업추진 방향을 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,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,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(안 제7조) 및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(안 제11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
 -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른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
- 제정안은 “조력준업사에 관한 종합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“제2차 호스피스 종합계획(2023)”의 연구용역비 1억 5,000만원이 추계 첫 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5년 주기로 “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”을 수립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“조력준업사에 관한 종합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150	-	-	-	-	150	30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추후 연구용역 별도수행여부 및 과제기간,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국가조력준업사위원회(안 제7조)

- 국가조력준업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”를 준용하여 총 15명

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 14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인당 20만원¹⁾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- 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”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과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, 총 15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 14인을 위촉하였음

□ 제정안에 따라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,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국가조력준엄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위원 수(A)	14	14	14	14	14	-	-
1회 참석수당(B)	0.2	0.2	0.2	0.2	0.2	-	-
연간 회의개최 횟수(C)	2	2	2	2	2	-	-
합 계(A×B×C)	5.6	5.6	5.6	5.6	5.6	28	5.6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(안 제11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조력준엄사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한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와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□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”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-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과 연례보고서 발간, 위원회 활동 기록 등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2024년 기준 국비 9,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- 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” 사업은 위원회 10회 개최, 연례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, 포럼 개최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등의 업무가 포함
 - 추가재정소요는 위 사례를 준용하며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 9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조력준엄사심사위원회 (안 제10조)	99	99	99	99	99	495	9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